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인 제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구로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법제처는 ‘알기쉬운 우리말 법령’ 사업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내용을 순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 의식이 제고되는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에 발맞추고자 760개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168개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2021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주로 사용되는 일본식 법령용어  
95개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개의 조례에서 100건의  
일본식 용어 사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안 뿐만 아니라 과거 수차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외래어 및 일본식 표현 조례안이 개정되어 왔음에도 반복적으로  
조례에 나타나고 있어 이런 사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용어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 작성 원칙에 관한 것인데,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치법규에 관한 문서는 공문서 중 법규문서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7조의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서작성을 하여야 하나 같은 조항에서는 일본식 표현·어투 등의 용어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치법규 입안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 제·개정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자치법규 입안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 입안 시 우리말 사용을 한층 장려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